#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신장식·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908

발의연월일: 2024. 12. 24.

발 의 자:김남근 · 신장식 · 한창민

권향엽 · 김동아 · 김영환

김용만 • 김 윤 • 박용갑

박해철 · 송재봉 · 오기형

유후덕 • 이광희 • 이병진

이연희 · 이재강 · 이재관

이재정 • 이훈기 • 임미애

정준호 · 채현일 · 황정아

의원(2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인수·합병,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또는 분할·분할합병 등의 주요 자본거래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지배주주 임원에 대한 과다한 보수지급이나 성과주식 배정 등의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사안에 이사, 이사회등 기업의 지배구조가 주주 전체의 공평한 이익보다는 지배주주나 그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이익에 충실하게 운영되면서, 투자자의 신뢰가 떨어져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지속되고,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거나 개미투자자가 대거 해외 자본시장으로 빠져나가면서 우리 자본시장 전체가

장기간 침체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책임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등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함께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각 사안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신주배정 등의 주주보호 조치와 특정 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격에 의한 합병비율, 주식매수가격 등을 정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함.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 지분 22.56%를 매입할 당시 지배주주 지분 인수가격은 주당 2만3,182원인 반면 소액주주에 부여된 주식매수 청구권은 주당 6,637원에 불과했고,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의 지분 43%를 인수할 당시엔 지배주주에게는 주당 1만6,518원, 소액주주엔 그 반값에 해당하는 주당 7,999원으로 주식매수 청구권이 부여된 사례와 같이 기업인수 시 지배주주 소유의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높은 가격에 매수하면서 일반주주의 주식은 헐값으로 인수하여 일반주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지배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매수하여보유하는 새로운 지배주주는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최근 1년 내 거래최고가격 등으로 공개매수를 하도록 함(안 제133조의2).

삼성물산-제일모직, 두산밥켓-두산로보틱스 사례와 같이 건실한 사업·재무구조를 가진 주식상장법인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부실한 계열사와 부당한 합병비율로 합병하는 경우, 합병 계열사에 대한지배력을 강화한 지배주주나 재벌 기업집단과 달리 장기투자하고 있

던 일반주주는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게 됨. 이에 주식상장법인의합병비율은 특정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특정 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금액으로 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의 과반수결의로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그 합병비율은 공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도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금액으로 하도록함(안 제165조의4제2항, 제165조의5제3항).

미래 유망성장산업인 2차 전지사업을 물적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후 상장하여 미래 유망성장사업을 잃은 모회사 주식가치가 떨어져일반주주가 피해를 입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례와 같이 자회사상장에 따른 모회사 일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자회사(물적분할에 의한 설립된 것 포함)를 별도 상장하는 경우상장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모회사의 주주에게 우선적으로배정하도록 함(안 제165조의7제4항)

내부 이익잉여금 상당히 유보되어 있고 매년 흑자를 내는 주식상장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인수인이 주식상장법인을 자진 상장폐지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은 신성통상 사례와 같은 상장폐지 시 일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상장법인을 인수한 자가 상장폐지 목적으로 나머지 지분을 공개매수하는 경우 주식가격, 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금액으로 공개매

수하도록 함(안 제141조제3항).

지나치게 낮은 할인율로 유상증자를 하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 는 일반주주는 주식가치 희석으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유상증자 전 주식 처분 등의 대응조치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수페타시스 사례 와 같이 일반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하지 못하도 록 금요일 저녁에 유상증자를 공시한 후 월요일 주식시장 개장 시 주 가가 폭락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거나, 고려아연 지배권 분쟁 시 유상증자 사례처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분확대 목적 으로 저가로 유상증자를 시도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 생하고 있음. 이에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임원 의 해임이나 직무정지 등의 경영권 분쟁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유상 증자를 금지하며, 유상증자 등 주요사항보고서는 거래소의 매매거래시 간 종료 2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함(안 제165조의6제5항 및 제6항, 제161조제1항).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주가하락 등을 이유로 최초 전환가격 보다 낮춰 행사(최대 70%까지 낮추어 행사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 소위 refixing)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일반주주는 주가가 희 석되어 피해를 입게 됨. 이에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의 경우 시가 변동에 따라 전환가액 또는 신주 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유상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분쟁 중에는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할수 없도록 금지함(안 제165조의10제3항 및 제4항).

지배주주가 임원을 담당하는 경우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여 주식상 장법인의 재무구조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주식상장법인의 주식가치가 하락하여 일반주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사의 보수를 정하 고자 할 때는 보수의 원칙과 목표, 보수 산정방법, 보수지급계획 등의 "보수정책"을 수립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하고 보수정책을 위 반하여 초과 지급된 보수는 무효로 반환하도록 함(안 제165조의21).

위와 같은 기업 인수·합병과 신사업 물적분할 후 별도상장, 상장폐지, 유상증자,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 행사, 지배주주인 임원에 대한과다보수 등 지급 사안 외에도, 주권상장법인에서 일반주주의 피해가발생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고 위와 같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일반주주 보호를 하는 경우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최대주주 등은 위 개별규정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자본거래, 손익거래방식을 만들어 이를 회피할 것이 예상됨. 이에 주식상장법인의 자본거래 등에서 일반주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가 주주에 충실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일반조항을 두도록 함(안 제165조의 22).

#### 법률 제 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3조의2(의무공개매수의 제의) ①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매수등을 통하여 보유하게 되는 주식이 해당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본인과 특별관계자가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해당 회사의 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인 자가 그 주식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잔여주식 전부에 대하여 현금으로 공개매수제의를 하여야한다.
  - ② 제1항의 공개매수 이후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된 회사의 주식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미만으로 낮추어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매수 이외의 방법으로 매수등을 할 수 있다
  - 1.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면서 추가로 매수등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2. 주주총회에서 본인 및 특별관계자, 최대주주 및 특별관계자를 제 외한 나머지 주주만으로 결의한 경우
- 3. 채권추심, 기업구조조정 등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 ④ 공개매수가액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최근 1년간 매수등을 한주식의 최고가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상으로 하며, 공개매수에 청약한 주주의 주식을 모두 매수하여야 한다. 그 밖에 매수 기간, 매수 방법 등 제1항의 공개매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매수를"을 "제133조 및 제133조 및 제133조 및 제133조 및 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 다른 공개매수를"로 한다.

제1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개매수자가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공개매수가격은 제165조의4제2항에 따른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45조 중 "또는"을 ", 제133조의2제1항 또는"으로 한다.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소의

매매거래시간 종료 2시간 전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제165조의4제2항 중 "주권상장법인은"을 "주권상장법인이"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 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를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로 하 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 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를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으로, "등에" 를 "등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 등의 목 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 할 수 있다"를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을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로. "정한다"를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공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나머지 주주만으로 결의한 합병 등 안건에 대해서는 합병 등 가액이 공정한 것으로 본다.

- ⑤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 ⑥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6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5제3항 단서 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을 "이사회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으로 한다.

제165조의6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배정의 경우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한다.
- ⑥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는 제165조의6제1항제1 호 이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 (이하 이 조에서 "소수주주"라 한다)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그 소집의 허가를 청구한 때에는 청구시부터 해당 임원의 해임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
- 2. 소수주주가 법원에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는 등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분쟁 사실 이 신고·공시된 후 그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
- ⑦ 주권상장법인이 제6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전환권을 행 사할 수 없다.

제165조의7의 제목 중 "우리사주조합원에"를 "우리사주조합원 등에"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를 "주권상장법인의자회사(「상법」제342조의2에"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를 "자회사를 말하며, 같은 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상장하기 위해 모집하거

나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대 주주는 제외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 6호나목1)의 대주주는 예외로 한다)에게 해당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및 제4항에 따른 주 권상장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 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5조의10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상법」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및 신주인수권을 보유한 자는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제6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별관계인이 「상법」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보유하는 경우(제165조의6제1항제1호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에 한한다) 시가의 변동에 따라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없다.

제165조의18제3호 중 "제165조의4제1항을"을 "제165조의4제1항·제2항을"로, "같은 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65조의4제2항을"을 "제165조의4제5항을"로 한다.

제3편제3장의2에 제165조의21 및 제165조의2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5조의21(이사의 보수)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를 정하고자 할 때는 법인의 보수 원칙과 목표, 보수 산정방법, 보수지급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보수정책"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후 3년 이내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수정책 중 보수지급계획을 제외한 사항들은 포함하지 아니할수 있다.
  - ②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정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정책이 없거나 주주총회에서 보수정책을 부결한 때에는, 가장 최근에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정책에 따라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지급된 보수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는 무효이다.
  - ④ 제2항을 위배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이사는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⑤ 주권상장법인은 제2항에 따라 각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이하 "보수보고서"라 한다) 로 작성하여 공시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한다.
  - ⑥ 제5항의 결의는 법인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 다만,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수보고서가 부결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다음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의할 때 보수정책 전부를 포함하여

결의해야 한다.

- 제165조의22(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445조제19호 중 "또는"을 ", 제133조의2제1항 또는"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33조의2(의무공개매수의 제의)
	①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매수
	등을 통하여 보유하게 되는 주
	식이 해당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u>100분의 25 이상인 경우(본인</u>
	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
	식의 합계가 해당 회사의 주식
	의 100분의 25 이상인 자가 그
	주식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잔여주식 전부에 대하
	여 현금으로 공개매수제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매수 이후 본
	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된 회사의 주식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u>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u>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하
	게 되는 주식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미만으로 낮추어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매수 이외의 방법 으로 매수등을 할 수 있다
- 1.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보유하면서 추가로 매수등을통해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경우
- 2. 주주총회에서 본인 및 특별관계자, 최대주주 및 특별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만으로 결의한 경우
- 3. 채권추심, 기업구조조정 등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라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 ④ 공개매수가액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최근 1년간 매수등을 한 주식의 최고가액 또는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 수신고서의 제출) ① 공개매수 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수를-----각 호의 사항을 공고(이하 "공 개매수공고"라 한다)하여야 한 다.

1. ~ 6. (생략)

② ~ ⑤ (생 략)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① · ② (생 략)

<신 설>

제3항 또는 제134조제1항 · 제2 -----, 제133조의2제1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 상으로 하며, 공개매수에 청약 한 주주의 주식을 모두 매수하 여야 한다. 그 밖에 매수 기간, 매수 방법 등 제1항의 공개매 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 수신고서의 제출) ① 제133조 및 제133조의2에 따른 공개매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개매수자가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하는 경 우 공개매수가격은 제165조의4 제2항에 따른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제133조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

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매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그 주식(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 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 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그 주식등(그 주식등과 관 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의 처분을 명 할 수 있다.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
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한 보
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
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단
서 신설>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소
의 매매거래시간 종료 2시간

1. ~ 9.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 (생 략)

-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 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 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 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 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 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 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 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 ④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전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1. ~ 9.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② 주권상장법인이----------<u>그</u>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 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에서 최대주주 본인과 특별관 계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 고 나머지 주주만으로 결의한 합병 등 안건에 대해서는 합병 등 가액이 공정한 것으로 본다. ③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등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의견서를 작 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 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 례) ① • ② (생 략)
  -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 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 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정하는 바에 따라 외 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 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공시해 야 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 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 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 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제5항에 따른 평가 업무 를 제한할 수 있다.
- ⑥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6항 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 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3)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략)

<신 설>

<신 설>

이사회가 주스	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
<u>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u>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 행과 같음)

- ⑤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배정의 경우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한다.
- ⑥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 의 기간 중에는 제165조의6제1 항제1호 이외의 방법으로 주식

을 발행할 수 없다.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수주주"라 한다)가 해당 주건상장법인의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그 소집의 허가를 청구한 때에는 청구시부터 해당 임원의 해임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
- 2. 소수주주가 법원에 해당 주 권상장법인의 임원의 직무집 행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주 주총회결의의 무효・취소 등 의 소를 제기하는 등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과 관련 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중 인 기간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해 당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분 쟁 사실이 신고·공시된 후 그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 7 주권상장법인이 제6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

<신 설>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 등에 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 례) ① ~ ③ (생 략)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권상장법인의 자회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 (「상법」제342조의2에-----자회사를 말하며, 같은 법 제53 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에 의 해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 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 고 상장하기 위해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주 주(대주주는 제외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조제6호나목1)의 대 주주는 예외로 한다)에게 해당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및 제4항에 따 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에 대 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 정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 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 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 정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상법」제513조 및 제516 조의2에 따른 사채 및 신주인 수권을 보유한 자는 주권상장 법인이 제165조의6제6항 각 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 권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별관계인이 「상법」 제5 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 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보유하 는 경우(제165조의6제1항제1호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 에 한한다) 시가의 변동에 따 라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 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없다.

한 조치) -----

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 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1. 2. (생략)
- 3. <u>제165조의4제1항을</u> 위반하여
   <u>같은 항</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제16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 25. (생략)
  <신 설>

1. • 2. (현행과 같음)
3. <u>제165조의4제1항 · 제2항을</u>
<u>제1항</u>
4. <u>제165조의4제5항을</u>
5. ~ 25. (현행과 같음)
제165조의21(이사의 보수) ① 주
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88
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를 정하
고자 할 때는 법인의 보수 원
칙과 목표, 보수산정방법, 보수
지급계회 등 대통련련으로 전

하는 사항(이하 "보수정책"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주주총회에

서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 주총회에서 결의된 후 3년 이 내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수정책 중 보수지 급계획을 제외한 사항들은 포 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정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정책이 없거나 주주총회에서 보수정책을 부결한 때에는, 가장 최근에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정책에 따라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지급된 보수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할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수를 초과 하여 지급된 보수는 무효이다.
- ④ 제2항을 위배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이사는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⑤ 주권상장법인은 제2항에 따라 각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이하 "보수

<신 설>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장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8의4. (생 략)

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공시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결 의해야 한다.

⑥ 제5항의 결의는 법인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 다만,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수보고서가 부결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법인은 다음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의할 때 보수정책 전부를 포함하여 결의해야한다.

제165조의22(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는 법
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 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 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 우하여야 한다.

H445조(벌칙)	

1. ~ 18의4. (현행과 같음)

19. 제133조제3항 <u>또는</u> 제140조	19 <u>,</u> 제133조의
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	제1항 또는
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	
을 한 자	
20. ~ 48. (생 략)	20. ~ 48. (현행과 같음)